

수원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4가단5068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6. 26.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8.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23. 8. 9. 접수 제754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김동석

별지